

한의예·학과 학사 지침

한의예·학과 수업 및 학생평가 시행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의 수업 및 학생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등록과 수강신청

제 1 절 등 록

제2조(등록)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①학생의 매학기 등록에 따른 납입금액과 납부 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학기 개시 20일전에 공시한다.

②수업연한 8학기 경과자로서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 4학기 경과자로서 수료하지 못한 한의예과 학생,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 중 추가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의 등록에 따른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학 점 수 별	납 입 금 액	
	수 업 료	학 생 회 비
1학점 ~ 3학점	총액의 6분의1	전 액
4학점 ~ 6학점	총액의 3분의1	전 액
7학점 ~ 9학점	총액의 2분의1	전 액
10학점 이상	전 액	전 액

③수업연한 8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유급된 자는 이수학점에 불구하고 해당 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청대상 학생 : 가계곤란(장학생수혜자 제외)으로 인하여 등록기간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2. 신청방법 및 절차 : 학생 및 보호자연서로 된 분할 납부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경리팀으로 제출한다.
3. 등록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납입기일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4. 분할 납부 신청기간 및 장소는 경리팀에서 사전 공고한다.
5.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 일부를 납부함으로써 학적보유를 인정하되 기간 내 분납 잔액을 미납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적 조치하며,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을 완납한 후 휴학 조치한다.

제3조(등록절차)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①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 후 제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완료된다.

②제1항 규정의 등록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경리팀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2. 장학생, 원호대상자 및 기타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도 제1항 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 절 수 강 신 청

제4조(수강신청 지도)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학생의 지도교수와 소속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당해 학기에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신청 절차)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와 소속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강의시간표상의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 및 교과목번호를 확인한 후 본인이 직접 전산 입력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기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학점)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①학생은 매학기 6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8차 학기를 이수한 자와 4차 학기를 이수한 한의예과 학생은 6학점 미만이라도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에 대한 학점은 학기별 수강신청 제한학점 외 별도로 이수가능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제7조(수강신청의 원칙)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①교과목의 이수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28조에 따라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다.

③타전공의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목 개설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④교과목의 배정학점을 변경하여 수강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⑤학기당 수강학점을 초과 신청하였을 때에는 교양선택, 일반선택, 전공선택, 학부(과)기초순으로 차례로 삭제하여 교무팀에서 임의로 규정학점에 맞추어 정정할 수 있다.

⑥수강신청은 우선적으로 하급학년의 미취득 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⑦승인받지 않고 동일과목의 성적을 이중 취득하였을 때는 처음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고 나중에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중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의예(학)과에서 개설되는 전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단, 대학 특수목적사업 참여학부(과)의 재학생은 한의예(학)과에서 허용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⑩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과목은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일반선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⑪입영훈련으로 인한 후보생 수강신청은 입영훈련 최소 1주일 전 희망 강의를 작성 후 관련부서에 제출, 관련부서는 이를 지원한다. 단, 우선수강신청은 교양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제8조(수강신청서의 정정)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①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그 과목이 폐강되거나, 강의시간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정하고자 할 때는 소정기일내에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②정정 및 교정 기회를 놓쳐 과목 삭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성적정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수강신청 교과목의 포기)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9조에 따라 ①수강신청한 교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담당교과목 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기한 나머지 수강과목의 총학점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학점 미만으로 낮출 수 없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자동적으로 낙제(F)가 된다.

③수강신청한 교과목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수강신청할 수 없다.

제10조(전과목 이수의 포기)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학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학사경고를 과하며, 당해 학기의 등록회수에도 포함한다.

제11조(수강신청의 효과)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①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과목은 삭제가 된다.

②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강신청서 관리 및 보관) 학생의 수강신청서는 당해 학기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제 3 장 수업 및 평가 방법

제13조(수업방법) 수업은 강의식의 단순 방법 또는 캡스톤디자인, PBL, 팀기반학습(TBL), 블랜디드러닝, 플립드러닝, LINC CLASS, 액션러닝, SD교수법, 클래스인클래스, STEAM, 기타 방법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수업의 학습 내용은 지식, 술기, 태도에 대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②수시시험은 학생들에게 학업 성과 달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형성평가로 볼 수 있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과목별 총괄평가는 학생의 학업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적 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

③임상교육 역량 종합평가(예: 졸업고사), 임상술기 종합평가(예: CPX, OSCE)는 총괄평가로서 시기별 종합평가를 의미한다.

영역	형성평가	총괄평가
지식	꼭지시험, (온라인)퀴즈, (대면)퀴즈, 토론, 보고서, In-Basket, One Minute paper, Brain Writing, 기타 형태 등	참거짓, 선다형, 단답형, 확장결합형, 논술, 구술, 임상시나리오 기반 지필, 핵심요소시험문제, 표절검사, 기타 형태 등
술기	DOPS, Mini-CEX, Jigsaw, 기타 형태 등	OSCE, CPX, Short case, Long case, 기타 형태 등
태도	출석, (발표, 토론 또는 실습) 태도, 성찰일지, 역할극, 체크리스트, 소크라티브, 기타 형태 등	360도 다면평가, E-포트폴리오, 기타 형태 등

제 4 장 학업성적 처리

제 1 절 성 적 평 가

제15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 ①학업성적은 학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과 평점 또는 백분위점수로 평가한다.

②한의(예)학과 학업성적의 학적부 기록은 점수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성적 평균점)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라 ①한의(예)학과 학생의 매학기 성적 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백분위점수)에 교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균점수로 한다.

$$\frac{(\text{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백분위점수)} * \text{교과목별 학점수}) \text{의 합계}}{\text{수강신청 총학점수}} = \frac{\text{학기 평점평균}}{(\text{백분위점수 평균})}$$

②한의학과 졸업 종합성적의 산출은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과목별 점수에 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총 이수학점수로 나눈 수치를 졸업 종합성적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모두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하고 그 미만은 버린다.

$$\frac{(\text{취득교과목별 평점(백분위점수)} * \text{교과목별 학점수}) \text{의 합계}}{\text{총 이수 학점수}} = \frac{\text{졸업종합 평점 평균}}{(\text{졸업종합 백분위점수평균})}$$

③ 본 대학교 학칙 제 32조 규정에 따라 성적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등급	A+	A	B+	B	C+	C	D+	D	F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백분위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55

④제1항 규정의 수강신청한 교과목중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F등급)은 과락으로 평점에는 가산하나, 이수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7조(성적평가) 본 대학교 학칙 제 31조와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①학업성적의 평가는 각 교과목 별로 출석(10-20%), 과제 및 발표(20-30%), 시험성적(50-70%)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등의 특수과목의 성적은 이를 따로 평가할 수 있다.

②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다만, 사회적 재난 및 재해,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구분	A	A~B	C	D	F
전 교과목	0~40%	0~70%	자율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기준표에 따른다.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 범위	성적분포비율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과목 (이 경우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은 수강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A등급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실험실습시간 만으로 편성된 과목	
계약학과 개설 과목	
국가자격증 관련 현장실습 과목	절대평가
군사학 과목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과목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과목 (이 경우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은 수강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대학원생 선수과목 이수학생	
외국대학 초청교류학생 및 외국인 입학자, 성인학습자*, 미래라이프융합대학 소속 재학생	
시간제등록생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과목	

* 성인학습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④성적평가에 관한 모든 기록물(시험지 답안, 성적일람표, 졸업논문, 과제물, 성적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성적증빙자료)은 해당교원이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성적)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①매학기 정기시험과 임시시험

에 의한 성적은 당해 학기의 성적평가에 70% 반영할 수 있다.

②교과목에 따라 2명 이상의 교수가 담당하여 강의할 때에는 공동 출제, 공동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추가

③학업성적은 강좌별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교과목을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합반하여 출제·평가할 수 있다.

제19조(출석성적)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라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1(한의학과는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에게는 해당과목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성적의 취소)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시험중 부정 행위로 당해시험 또는 전과목을 무효처분 받은 자.
2.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3. 미등록한 자가 취득한 성적
4.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성적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 2 절 시 험

제21조(시험)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①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는 정기시험과 담당교수에 따라 시행하는 임시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정기시험에 불응할 만한 사유로 승인을 받은 학생을 위하여는 추가시험 및 조기시험을 시행하고 정기시험 결과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

③시험은 반드시 수강신청한 학반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제22조(추가시험)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1조에 따라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시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질병일 경우: 본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
2. 상고의 경우: 부고
3. 기타의 경우: 증빙할 만한 서류

②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며 그 성적은 B급 이하로 한다.

제23조(조기시험)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2조에 따라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가 조기시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조기시험원을 제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입영 응소: 군입영 명령서 사본

2. 기타 경우: 증빙할 만한 서류

제24조(재시험)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에 따라 ①한의학과에서 당해학기 성적사정 후 학기 평점평균이 2.0 이상이고 1.0 미만인 교과목이 1과목인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통보에 의하여 과목 담당교수는 일정기간 내에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B급 이상의 성적을 얻지 못한다.

②재시험은 1회에 한한다.

제25조(자격증 등에 의한 성적정정)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라 교양교과목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공인기관에서 취득한 점수 및 자격증에 의하여 “별표”에 따라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26조(재수강)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①재수강은 과목번호 및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1회에 한하여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재학 중 총 6개 교과목 이내로 재수강할 수 있다.

②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수강하여 취득한 최종 성적만 인정한다.

③재수강 이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학점과 평균평점에 포함하지 않으며, 성적증명서 상 교과목에 “R(Retake)”을 병기한다.

④ 졸업에 필요한 필수 교과목을 F학점 취득한 경우, 재수강 신청가능 교과목 수를 초과하여도 재수강할 수 있다.

제 5 장 성적의 통보, 학적부 관리

제27조(성적의 통보)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8조에 따라 ①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학생이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②이수 성적표는 졸업시까지 보관, 활용하여야 한다.

제28조(성적공시 및 이의 신청)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학생들이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의 성적입력 기간내에 과목성적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성적 열람후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열람(이의신청)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③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정정기간내에 해당 학생에게 성적평가 기준, 평가점수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성적이의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성적을 수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성적정정)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9조의 2에 따라 ①제출된 성적은 정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성적누락, 기재(전산입력)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답안지, 출석부, 과제물 등)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교무팀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제출된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 그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학사정에서는 제외된다.

③성적확정 이후 성적정정원에 의한 정정은 성적 부여가능 비율을 초과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학적부 관리 및 열람)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①학적부는 다양한 방법(코팅,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으로 관리한다.

②4학년 학생은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기간에 학적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 6 장 휴학, 복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 1 절 휴 학

제30조(휴학구분)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1조에 따라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휴학으로 구분한다.

제31조(휴학기간)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2조에 따라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속 휴학을 원하는 경우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1년간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일반휴학)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3조에 따라 ①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을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소정의 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휴학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신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년도 1학기에 한하여 질병,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이외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반휴학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중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미등록 학생의 휴학은 수업일수 1/4 이전에 허가할 수 있다.

④등록을 마친 자로서 수업일수 1/3이전까지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할 때 전액인정하고, 수업일수 1/3을 초과하여 수업일수 1/2이전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할 때 납입한 금액의 반액을 인정한다. 수업일수 1/2을 초과하여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인정때 전액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한의학과 수업일수 3/4이전에 휴학한 자는 복학할

⑤일반휴학중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본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필요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다.

⑦창업으로 인하여 휴학이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다.

제33조(군입대 휴학)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에 따라 ①군입영 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입영 1주일전에 입대 휴학원을 보증인 연서로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개강전 군입대 휴학은 전산입력에 의한다.

②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3분의 2이전에 군입대 예정자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적증명조회원을 첨부 입영을 위한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등록한 학생은 복학 학기의 등록금 납입을 면제한다.

③군입대 휴학기간은 군입대일로부터 기산하여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제34조(휴학자의 성적인정 특례)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5조에 따라 ①당해학기 수업일수 3분의2(한의학과는 4분의 3) 이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수업일수 3분의2(한의학과는 4분의 3) 후 정기시험 전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성적은 출석, 예·복습 및 과제, 임시시험 성적으로서 당해 학기의 학기말 성적으로 대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한의학과는 수업일수 4분의 3 후 정기시험 전에 입영하는 자는 조기시험원을 제출하여 조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35조(휴학의 변경)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일반 휴학 기간 중에 군입영 명령서가 발부되거나 지원입대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전산입력을 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36조(휴학의 취소)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7조에 따라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 발생 7일 이내에 보호자 연서의 휴학 취소원에 증빙서류(군입영 귀가자인 경우, 귀가증 사본)를 첨부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 절 복 학

제37조(복학 및 그 절차)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8조에 따라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내에 전산입력으로 복학신청 한다. 다만, 휴학기간 전이라도 해당 학년 또는 그 과목의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기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일반 휴학자의 복학)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9조에 따라 일반 휴학자의 복학

은 지정된 복학기간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군입대 휴학자의 복학)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0조에 따라 ①재학중에 입영하여 휴학한 자는 제대후 1년 이내 소정의 기간중에 전산입력으로 군제대 복학 신청하여야 한다.

②한의학과 군입대 휴학자 중 전역일자가 학기 개시일 이후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1/4선 이내에 수업참여가 가능할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의 수업참여확인서(취학승인서) 및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제40조(휴학자의 제적)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1조에 따라 휴학자가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4조제1호 규정에 의거 제적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군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면 제적한다.

제 3 절 재 입 학

제41조(재입학)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2조에 따라 ① 퇴학 및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때는 제적전 재적하였던 원적학부(과) 및 전공에 소정 기간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징계제적자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견서, 학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1학년부터 4학년 학생 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자의 성적은 제적 또는 자퇴 이전에 이수한 전 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미취득한 선수 및 필수과목은 타과목에 우선하여 수강·이수하여야 한다.

제 4 절 편 입 학

제42조(편입학)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3조에 따라 ①편입학은 제3학년 입학허가를 원칙으로 하나 전문대학 3년제 학과를 졸업(예정)한 자는 제4학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편입학의 허가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학사 학위를 가진 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3학년에 편입학을 할 수 있다. 한의학과 편입학은 한의학과 1학년으로 입학을 허가한다,

④편입학이 허가된 자가 편입학 후 그의 학력 및 자격증명서에 허위의 사실이 나타날 때는 제적처리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3조(편입학 절차)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①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편입학 원서를 입학팀에 제출하여 편입학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편입학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편입학시험 공고시에 발표한다.

제44조(학점이수 및 성적기록) ①한의학과에 편입한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한의학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 이수에 따른 수업 및 성적 취득에 관한 사항은 한의예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학과에서 지정한 한의예과 전공과목 40학점 이상 이수

②학년별로 개설된 전공필수 과목 포함하여 160학점 이상 이수

제 7 장 학사경고 및 학업성적 부진

제45조(학사경고)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① 한의예과 학생은 학업성적이 평점평균이 1.5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과하고, 한의학과 학생에게는 학사경고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급제를 적용한다.

②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개강전에 지도교수와 보호자에게 통고한다.

③재학 중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졸업(수료)하는 최종학기의 학생 및 특별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한의예과 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4학점을 감한다.

제45조의 2(학사경고자 특별지도) 재학 중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습능력 신장을 위하여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 2가지 이상 이수할 경우 재학 중 총 2회에 한하여 학사경고 누계 횟수에서 삭제한다.

제45조의 3(학업성적 부진자 특별지도) ① 전 과목의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학업성적 부진자는 학습능력 향상과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멘토상담교수와 수업형태 및 학생평가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② 과목별로 학업성적이 하위 5%에 해당하는 학업성적부진자는 과목별 담당교수와 상담이나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고, 담당교수는 그 결과물을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 8 장 유 급

제46조(적용대상) ①유급은 한의학과에 한하되 성적사정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학기별로 구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1. 학기 평점평균이 2.0점미만인 자

2. 평점 1.0미만의 과목이 있는 자

②유급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유급된 자의 전과목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고 해당학기의 전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유급휴학)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6조에 따라 유급이 결정된 자는 교학처에서 다음 학기를 일괄 휴학 처리한다.

제47조(이수학점 인정)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7조에 따라 한의예과에서 제적된 자의 성적이라도 전과 또는 전학할 때에는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유급자 특별지도) 유급된 자는 유급 중이거나 복학 시에 학습능력 향상과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멘토상담교수와 상담을 해야 하며, 담당교수는 그 결과물을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 9 장 졸 업 논 문

제49조(논문 시행계획 및 졸업종합시험 실시) 본 대학교 학칙 제38조와 학칙 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학부(과)장은 사전에 졸업논문 등 시행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의학과의 경우에는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50조(수료자 및 졸업학점 미달자 조치)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①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논문 미제출자 및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수료 후 매 학기 소정의 제출 기간 내에 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합격하였을 경우 학위증을 수여하되 그 시기는 논문 합격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②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 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논문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③졸업종합시험 불합격자, 실험실습 미보고자, 실기 미발표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졸업종합시험)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1조에 따라 ①졸업종합시험은 졸업 최종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험과목은 각 학과별로 정할 수 있되, 시험 내용은 전공과목에서 출제하여야 한다.

③졸업종합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52조(한의예과 종합시험)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2조에 따라 ①한의예과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종합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종합시험에 불합격한 때에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한의학과의 진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한의예과 과정을 수료한 자가 한의학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인 한자 급수(3급 이

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한의예과 수료 최종학기에 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결과보고)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3조에 따라 ①졸업논문심사,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의 시행결과보고서는 소정기간내에 교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논문은 학부(과)장이 보관한다.

제 10 장 계 절 학 기

제54조(수강자격)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4조에 따라 계절학기는 본대학교 재학생 및 타대학교 학점교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5조(개설교과목)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5조에 따라 개설과목은 재학생의 학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다.

제56조(수업시간)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계절학기는 여름방학 중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 수는 1학점당 15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겨울방학 중에도 개설할 수 있다.

제57조(수강신청 및 수강취소)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라 ① 계절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2분의 1경과 후에는 수강취소 할 수 없다. ②계절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제58조(수강료 및 수당)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8조에 따라 계절학기 수강료는 개설 학점 단위로 산정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1. 수업개시일 전 : 수강료 전액
2. 수업일수 3분의 1 경과 전 :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3. 수업일수 3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2분의 1 경과 전 :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4.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제59조(개설 교과목의 취소)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에 따라 ①계절학기 교과목의 개설 취소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개설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60조(시험)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70조에 따라 계절학기 시험은 수업 최종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업 중에 간단한 시험을 부과하거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단, 교과목당 수업시간 수의 4분의1 초과 결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1조(성적평가)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71조에 따라 성적평가 비율은 A학점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성적처리)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72조에 따라 ①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학칙에 규정된 학점으로 인정하며 일반학기과 구분하여 평점평균을 산출한다.
②계절학기의 성적은 졸업 평점평균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

(시행) 이 지침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